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2. 조치일 : 2023. 2. 14.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7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총 ◎개의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추출기준이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추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시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추출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건 검토 불철저

내규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내·외부 보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내규 규정과 달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미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제외의 적정성 점검 및 보고책임자 보고 등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 테마 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시기 바람

(3)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 2019.7.1.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기 전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이 다소 미흡하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이행률을 제고하시기 바람

㈏ 고객이 입력한 정보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담당자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검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

(4)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 동일 이용자 고객이 여러 개의 계정(ID)을 만들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고객기준이 아닌 계정기준으로 운영함에 따라

동일 고객임에도 계정별로 거래항목 및 거래규모 등의 차이에 따라 고객위험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 기준으로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고객위험평가모형에서 가맹점 고객에 대한 업종위험을 평가할 때,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은 위험 수준을 식별·평가하지 않고 동일한 위험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위험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위험평가시 가맹점 고객별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5)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 및 감사 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아 이사회가 독립적 감사의 사후조치 경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지적사항이 검사착수일까지 개선되지 않는 등 개선조치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AML팀이 평가지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련 내부시스템에서 가져와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나, 자료의 적정성·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동 자료의 입력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 전체의 위험평가가 잘못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감사업체 선정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6) RBA 위험평가 관련 운영 불합리

2019.7.1.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사적 위험평가(이하 'RBA 위험평가')를 지연실시하였고

내규상 근거 또는 검토 없이 세부적인 평가항목 등을 매년 임의로 변경해서 수행하고 있고, RBA 위험평가 관련 업무매뉴얼 내용이 실제 운영실태와 상이하며

RBA 위험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를 경영진에만 보고하고 이사회에 미보고하였으며, 과거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개선조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RBA 위험평가의 평가항목, 평가절차, 수정·변경을 위한 검토절차 등을 내규 또는 업무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RBA 위험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조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람

(7) 신상품 위험평가 운영 불합리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의 관점에서 상품의 신규성 및 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실무상 신상품 위험평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위험평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세탁위험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람